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나20134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나20134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 선고 2018가합5626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양나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 선고 2018가합562600 판결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32,217,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8행의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를 "도로로서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2059 판결 참조), 2014. 11. 28.경 이 사건 5 내지 9, 22 토지에 관하여 측량감정한 결과 위 각 토지의 현황이 모두 도로로 확인된 점(갑 제5호증의 1, 2)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1, 4, 5, 6, 20, 22, 29, 30의 각 영상에 표시된 이 사건 1, 4, 5, 6, 20, 22, 29, 30 토지의 위치가 실제 위치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위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9행과 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항소이유에서 드록 있는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판결은 이 사건과 적용

법령이나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제1심판결 제14면 2행의 "시행"을 "실시계획"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11행과 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이루어지려면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참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청 또는 총괄청만이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2조, 제27조, 제40조, 공유재산법 제11조, 제19조). 그러나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는 개발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종래 공공시설 관리청의 동의 없이도 종래 공공시설의 용도폐지 및 무상귀속·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청은 종래 공공시설의 관리청 또는 총괄청의 동의 없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용도폐지 권한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과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용도폐지가 요구되는 이유가 용도폐지 없이는 시행자가 종래의 공공시설을 처분·환가할 수 없기 때문인 점을 보태어 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이루어지려면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법리의 의미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청 또는 총괄청이 스스로 용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시행자가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무상취득하게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청 또는 총괄청이 스스로 용도를 폐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상귀속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관리청 또는 총괄청이 스스로 용도를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형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가 폐지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취득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선준 판사 성충용 판사 김세중